바로 보는 행정법 모의고사 '오답노트'
박준철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공무원이 청문의 주재자가 되어 청문을 진행할 경우 그것만으로 청문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ㄴ.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ㄷ.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등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ㄹ.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장소, 주요 내용 등을 관보,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나, 청문과 달리 당사자 등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ㅂ.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경우 일반적인 공청회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출제영역]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난이도] 중
[정답률] 11%
[해설]
ㄱ. ×

행정절차법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ㄴ. ○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ㄷ. ×

행정절차법 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ㅁ.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ㅂ.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4. 甲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A회사의 신제품개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청장은 A회사에 대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ㄴ. A회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특허청장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ㄷ. 특허청장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면 甲은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특허청장이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공개실시일 사이에 1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ㅁ. 특허청장이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A회사는 그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ㅁ
③ ㄷ, ㄹ　　④ 없음

[정답] ④
[출제영역]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난이도] 중
[정답률] 28%
[해설]
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 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ㄷ.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ㅁ. × 제3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공개결정에 대하여 A회사는 그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취소소송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허청장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